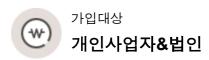
# 인쇄하기

영업점

무방문, 무서류 간편 대출 가능

# KB 소상공인 119plus 장기분할상환 대출



## 상품안내

#### 상품특징

-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에 보유한 대출을 최대 10년 이하의 장기분할상환으로 재대출, 대환 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상품

## 대출신청자격

- 정상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1) 또는 (2) 의 소상공인\* 차주 중 채무조정 등을 신청한 기업고객
- (1)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 (2)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 \* 소상공인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ㅇ전년도 매출액 20억 미만
- o전년도 총자산 **10**억 미만
- ㅇ당행 총여신 10억 미만
- ㅇ주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미해당
- \*\*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연체우려 차주로 간주
- ㅇ 개인사업자
- □ 소매형 SOHO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기업협 SOHO 신용등급 B+ 이하인 개인기업
- □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저신용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10
- 에 해당하는 신용평점)인 개인기업
- □ 최근 6개월 이내 당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15일 이상인 개인기업
- ㅇ 법인사업자
- □ 신용등급 B+ 이하인 법인기업
-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법인기업
- □ 영업이익이 (-)인 법인기업
- □ 최근 6개월 이내 당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15일 이상인 법인기업
- 다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의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 대출금액

- 기존 대출잔액 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1) 담보대출 : 최대10년 이내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이내)(2) 신용대출 : 최대 5년 이내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이내)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대출기간

(1) 담보대출: 최대10년 이내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이내) (2) 신용대출: 최대 5년 이내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이내)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금리 및 이율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구성되며, 12개월주기 변동금리 적용하되 대출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고 정금리 적용

단, 2028.04.17까지 신청한 차주의 경우 대출기간 중 최대금리는 기존 대출의 금리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리예시(소매형SOHO 신용등급 7등급, 제조업, 담보비율100%,

12개월 변동금리, 운전자금 10년\_3년거치 원금균등분할상환, 2025.04.18 기준)

ㅇ 기준금리 : 연 2.65%

○ 가산금리 : 연 3.86%p ~ 연 3.96%p

ㅇ 적용금리 : 최저 연 6.51% ~ 최고 연 6.61%

\*위 금리는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금리는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동금리 : 「매 12개월마다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기준금리 : 금융채 AAA등급 채권시장수익률

- 금융투자협의 공시기준으로 전주 마지막 영업일 전영업일의 종기를 적용

☞ 가산금리 : 고객 신용등급 및 담보비율,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상품우대금리 : 아래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연0.10%p 우대 가능

o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자녀, 만 65세이상, 다문화가정, 은행 및 정부·지자체 ·공공기간 등의

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수료자

#### 조기상환수수료

- 면제

# 이용안내

## 유의사항 및 기타

## 재대출, 대환 대상대출

- 신청시점에 '소상공인 119plus' 대상 차주가 보유한 당행 기업대출을 대상으로 지원

단,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대출은 대상대출에서 제외된다.

(1) 외화대출

(2)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

(3)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출

(4) 파생상품(금리, 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

- (5) 한도성 여신(B2B대출, 구매자금대출 등) 단, 기업종합통장자동대출은 지원 가능
- (6) 정책자금대출, 협약대출
- (7) 보증기관(신·기보, 지신보 등) 보증서 담보대출
- 단, 보증기관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8) KB 소상공인 119plus 장기분할상환 대출

## 담보변경 금지

- 재대출. 대환 시 기존대출의 담보(설정내역 포함)을 동일하게 원용하여야 함
- 기존대출이 '담보대출 → 담보대출', '신용대출 → 신용대출'로 취급 필수

## 이자계산 방법

-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대출은 이를 365(윤년 366)로 나누어 계산

#### 원리금상환 방법

- 원금

- ㅇ 거치기간 없는 경우: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에 균등 분할 상환
- ㅇ 거치기간 있는 경우 : 거치기간 종료 후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에 균등분할 상환
- 이자: 대출잔액에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원금납입주기와 동일한 월단위 또는 매1개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납부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 약정 납입일에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분할상환대출은 원리금 납입을 연속하여 2회이상 연체하는 경우, 일시상환 대출은 14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 부과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 3%p] 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0%로 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연체이자율은 이자율에 연 2.0%p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단,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기준,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의 만기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 수수료 등 부대비용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 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액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등기 하는 경우(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는 은행 부담 / 감액 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설정금액의 10/1,000)는 고객 부담
- ㅇ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 부담
- 보증료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단,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개인 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기준,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대출의 만기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등록정보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부과시기

-대출이자는 대출약정시 정한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예시] 매월(00)일에 지급합니다]

##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해당없음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개시일 : 2025.04.18 - 종료일 : 2027.03.31

## 대출실행시 부가혜택

-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KB스타클럽제도 등에 선정되어 수수료 우대를받을 수 있음

## 기타 계약사항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 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합니다.
- ※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 후 최종 결정됩니다.

#### 판매종료 여부

- 판매중

####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 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 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고객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 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 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 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 고객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 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되어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고객님의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제공 등)에는 증빙자료와 함께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신용평가 및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상품개발 부서는 기업상품부이며 위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대출 취급할 경우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550-2호(2025.04.17)

(유효기간: 2025.04.18~2027.03.31)